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00.00.~00.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있음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)”을 “(시·도의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법 제18조제2항”을 “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8조의2제1항”으로,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각각 다음 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”을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환경계획”으로 제2호 중 “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”을 “국가환경종합계획”으로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시·도의 공간환경정보 관리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·도지사 및 관할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자체적으로 수집·생산하는 정보

2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존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공간환경현황 및 공간환경계획 정보
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및 정보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환경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“(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)”을 “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)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법 제19조제2항”을 “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9조의2제1항”으로, “다음 각 호의”를 “각각 다음 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)이라 한다)”를 “시·군·구의 환경계획”으로 제2호 중 “국가환경종합계획, 중기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”을 “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의 변경”으로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시·군의 공간환경정보 관리) ① 시장·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장·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·생산하는 정보
2.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
기존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공간환경현황 및 공간환경
계획 정보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및 정보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
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국을
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
2. 위반행위를 한 자
3.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
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 및 횟수,
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
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4조(중기계획의 내용 등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(이하 “중기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</u> <u>2.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③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,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시·도”라 한다)</u>	<u><삭 제></u>

별,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역별
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중기계획의 경미한 변경)

<삭 제>

법 제1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
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
경우를 말한다.

1.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
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
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
2.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
따라 중기계획을 변경하려는 경
우로서 중기계획의 기본 목표
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
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
우
3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
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
하려는 경우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)

<삭 제>

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
사는 중기계획의 해당 연도별
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매
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(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)

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·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)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

<삭 제>

제8조(시·도의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)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법 제18조의2제1항-----

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환경보전계획(이하 “시·도 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

2.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·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·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
3. (생략)

<신설>

-----각각 다음 각 호의-----

1. -----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환경계획-----

2. 국가환경종합계획-----

않는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시·도의 공간환경정보 관리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1. 시·도지사 및 관할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

제9조(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)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·군·구의 환경보전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환경계획”)이라 한다)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

구청장을 말한다)이 자체적으로 수집·생산하는 정보

2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·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존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공간환경현황 및 공간환경계획 정보
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및 정보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시·군·구의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)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9조의2제1항---

-----각각 다음 각 호의-----

1. -----

-----환경계획-----

2. 국가환경종합계획, 중기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·군·구의 환경계획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

3. (생략)

<신설>

2.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·도 환경계획의 변경-----

-----않는-----

3. (생략)

제9조의2(시·군의 공간환경정보 관리) ① 시장·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1. 시장·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·생산하는 정보

2.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·군·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존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공간환경현황 및 공간환경계획 정보
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및 정보

<신 설>

제12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

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
2. 위반행위를 한 자
3.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692